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상대방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방침

다음 소송 사건의 상대방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이에 동의하고 소송을 종결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건개요

○ 사 건 명 : *****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
○ 당 사 자 : 원 고 *****

피 고 서울 강남구청장

○ 소 가 : 68,697,700원

○ 관할법원 : 서울행정법원(제11행정부)

○ 청구취지 :

- 피고가 2014.4.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-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○ 청구원인 : 원고는 수입사건의 보수금을 2010년 보수금관련 청구소송으로 수령하고 2010년귀속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, 보수금의 수입시기를 수입사건 승소판결일(2008.2.14)로 보아 가산세와 지연배상금을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소를 제기

나. 소송진행사항

○ 2014. 11. 07. 소장 접수

○ 2015. 02. 27. 1차 변론기일

○ 2015. 05. 27. 2차 변론기일

○ 2015. 06. 03. 원고 소 취하서 제출

○ 2015. 06. 04. 소 취하서 접수

